

**무배당수호천사 NEW 알뜰플러스
종신보험**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수호천사 NEW 알뜰플러스종신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의 명칭	상품형태		
무배당수호천사 NEW 알뜰플러스종신보험	보장형	평준납입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체감납입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UL 종신전환형		

주 1) 다만, UL 종신전환형은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임

주 2) 표준형은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보장형

- 최저 가입나이 : 만 15 세
- 최대 가입나이 : 상품형태별, 성별, 납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음

가) 평준납입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남자	여자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	5 년납	63 세	68 세	월납
	7 년납	65 세	69 세	
	10 년납	65 세	70 세	

나) 체감납입형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남자	여자	보험료 납입주기	
	제1 납입기간	제2 납입기간	제3 납입기간				
종 신	10 년납	4 년	3 년	3 년	70 세	74 세	월납

2) UL종신전환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전환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종 신	일시납	만15세 ~ 65세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하지 않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1) 평준납입형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로 한다.

2) 체감납입형

납입구간을 제1납입기간, 제2납입기간, 제3납입기간으로 구분하여 제1납입기간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신, 제2납입기간·제3납입기간에 더 적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형태로 제1납입기간, 제2납입기간, 제3납입기간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영업보험료 : 제1납입기간동안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로 한다.

나) 제2영업보험료 : 제2납입기간동안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제1영업보험료의 50%를 말한다.

다) 제3영업보험료 : 제3납입기간동안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제1영업보험료의 25%를 말한다.

나. UL 종신전환형

1) 기본보험료

UL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전환금액을 말한다.

※ 전환금액 :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

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3) 보험료 납입한도

가)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로 한다.

나)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100%로 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 기본보험료 × 10%

다)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가) 및 나)의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가) 및 나)의 납입한도에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분까지 가능하며,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다만, 체감납입형의 경우 선납 대상기간이 제 1 납입기간, 제 2 납입기간, 제 3 납입기간 중 2 개 이상의 납입기간에 걸쳐있는 경우 선납이 불가하며, 선납 대상기간이 각 납입기간 중 어느 1 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선납이 가능하다.

나. UL종신전환형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월납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가'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UL 종신전환형 계약에 한함)

가.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부터 '나'에서 정한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연도 기준 연 12 회까지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전환금액 및 전환 이후 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나. 1 회당 인출가능금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이하로 한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의 계약자적립액이 일시납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30%, 월납의 경우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24 배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라. 인출금액은 10 만원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13.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에 한함)

- 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나.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 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 제공으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상이할 수 있다.
- 라.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1)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4.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UL종신전환형 계약에 한함)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나. '가'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16. 계약자적립액의 계산(UL 종신전환형 계약에 한함)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 1)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한 금액)를 말합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가)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보험가입금액}}{\text{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나)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가)'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나. UL종신전환형

- 1)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전환금액 및 전환 후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전환금액 및 전환 후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에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의 기본보험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가)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나) 중도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중도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액} - \text{인출금액}}{\text{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액}}$$

다) 「감액(또는 중도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중도인출) 전에 감액(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신청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1 회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선지급개시일('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이하 '연금선지급개시일'이라 한다) 당일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피보험자의 나이가 45 세이상 80 세 이하인 경우
- 2)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 년 미만인 경우에는 10 년)이 경과한 계약

3)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계약

나. 연금선지급기간 : 2~30 년(연단위)

다.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선택가입금액과 연금선지급기간(2~30 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신청당시 보험가입금액에서 총가입금액대상금액(선택가입금액 x 연금선지급기간)을 차감한 금액이 1,000 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회사는 매년 선택가입금액을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고,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으로 지급한다.

라.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1)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은 연금선지급개시일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매년 연금선지급일(연금선지급개시일 이후 1 년마다 돌아오는 월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이하 '연금선지급일'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 2)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지가 가능하며,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중지하고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을 신청할 수 없다.
- 3) 연금선지급기간 중에 아래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은 종료된다. 다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1)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마. 계약자는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아래의 사항을 청구할 수 없다.

- 1)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 2) '19.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
- 3) 약관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감액
- 4) '20. UL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UL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 5)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간병선지급서비스특약 및 선지급서비스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선지급

바. '다'에서 계산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에는 약관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제 1 항 제 2 호 및 같은 조 제 7 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19.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 신청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 년 미만인 경우에는 10 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해약환급금의 중도지급을 원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8.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금선지급기간 동안에는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을 신청할 수 없다.
- 2) '1)'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 신청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중도지급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약환급금 중도지급금'은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 신청 당시 해약환급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해약환급금 중도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 신청시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중도지급금'을 지급하고, '해약환급금 중도지급금'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신청당시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 신청당시 보험가입금액에서 '해약환급금 중도지급금'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0 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중도지급옵션'을 신청할 수 없다.

라. '나'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도지급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약관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제 1 항 제 2 호 및 같은 조 제 8 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20. UL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의 경우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UL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서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환이 승낙된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전환한다.

- 1) UL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은 계약변경 신청일부터 30 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이하 '전환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2)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3) 계약변경 신청일 이후 전환일 전일까지 UL 종신전환형 계약 신청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전 계약으로의 환원은 불가하다.
- 4) 기타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나. '가'에 의하여 '보장형 계약'을 'UL종신전환형'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UL종신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또는 1)호 및 2)호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한다.

- 1)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자녀 중 1인
- 2)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다. '나'의 1)호 및 2)호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교체 전 피보험자 및 교체 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환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21.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제공된 유지보너스 금액은 적용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75%, 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2.0%)로 적립하며, 이를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 유지보너스 발생일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아래의 보험료 납입기간별 각 경과시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 유지보너스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유지보너스 금액
-------------	------	----------

5 년납	5 년 경과시점	「“주계약 월납 보험료×12×보험료납입기간(년수)×100.0%”에서 “7 년 경과시점의 해약환급금(다만,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포함하지 않음)”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2 년간 할인한 금액
	10 년 경과시점	「주계약 월납 보험료×12×보험료납입기간(년수)×보너스기준율」에서 「“10 년 경과시점의 유지보너스” 발생 직전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7 년납	7 년 경과시점	「주계약 월납 보험료×12×보험료납입기간(년수)×100.0%」에서 「“7 년 경과시점의 유지보너스” 발생 직전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10 년 경과시점	「주계약 월납 보험료×12×보험료납입기간(년수)×보너스기준율」에서 「“10 년 경과시점의 유지보너스” 발생 직전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10 년납	10 년 경과시점	「주계약 월납 보험료×12×보험료납입기간(년수)×보너스기준율」에서 「“10 년 경과시점의 유지보너스” 발생 직전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 보너스기준율: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너스 기준율
60 세 미만	5 년납		123.9%
	7 년납		120.0%
	10 년납	평준납입형	113.9%
		체감납입형	118.2%
60 세 이상	5 년납		118.9%
	7 년납		115.0%
	10 년납	평준납입형	108.9%
		체감납입형	113.2%

나. '가'에도 불구하고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그 직전 월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유지보너스 금액을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제공하지 않으며,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제공한다.

다. '나'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제공하는 금액은 유지보너스 금액이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정상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라.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에서 정한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별도로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다. 보험기간 중 해당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주계약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을 적용한다.

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전환시에는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22. 기타사항

가. 상품명칭 운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나.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1)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은 전환전계약 가입당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3) 무배당유가족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4)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시 연금지급방법 중 확실한플러스종신연금형은 운영하지 않는다.

라.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1) 보장형 : 500 만원 이상
- 2) UL 종신전환형 : 250 만원 이상

마. 회사는 계약자가 UL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바.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사. 보장형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약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아. 체감납입형 납입방식에 관한 사항

체감납입형은 납입구간을 제 1 납입기간, 제 2 납입기간, 제 3 납입기간으로 구분하여 제 1 납입기간에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신, 제 2 납입기간·제 3 납입기간에 더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다음 내용을 적용한다.

- 1) 회사는 체감납입형에 대해 평준납입형 대비 1 차년도 수수료를 높게 설정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체감납입형에 대해 평준납입형 대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다.
- 3) 회사는 체감납입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체감납입형 납입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안내한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으며 저
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인/서명)
친권자				(인/서명)	친권자	(인/서명)